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10.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0. 11. 16

다. 상 정 일 자 : 2000. 11. 16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김 종 철

나. 개정사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완화 개선코사함.

다. 주요내용

-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 완료후 상당한 수익 발생이 예상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이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안 제7조 제2항)
- 군수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 결정을 변경·취소 하는것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 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내용과 법령 및 예산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함(안 제10조 제1항)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내용변경 및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동조례 제16조와 중복된 부분이 있으므로 중복 규제된 부분 삭제(안 제12조 제1항)

- 보조금 교부결정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보조금 교부 받은자에 대한 제재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부결정시 검토할 부분 삭제(안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본 개정 조례안은 보조금 이용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관련 법규에서 이중으로 규제된 사항등을 삭제하는등 조례의 내용을 보다 현실성있게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 보조사업자의 소신있는 사업수행으로 수익증대가 예상되며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취소등의 사유를 보다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민주성의 제고 및 행정규제 완화 효과가 기대됨.
- 지방재정법등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 및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보조사업의 내용과 범령 및 예산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2호와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보조금의 교부목적은 달성할 수 없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생략)</p> <p>② <u>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u></p>	<p>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u>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u></p> <p>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p>	<p>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 - - - -</p> <p>- - - <u>보조사업의 내용과 법령 및 예산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u> - - - - -</p> <p>- - - - -</p> <p>- - - - -</p>
<p>②~③ (생략)</p> <p>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 <u>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 <u>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15조(감독) <u>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u>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u>보조금을 교부를 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감독) <u>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u>을 기하기 위하여 <u>보조금의 교부를 받은</u>자에 대하여 <u>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보고</u>를 하게 하거나 <u>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u>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자에 대한 제재) <u>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u></p>	<p>제17조(보조금은 교부받은자에 대한 제재)</p> <p>- - - - -</p> <p>- - - - -</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1. -----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2. (삭제)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u>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보조금의 교부목적</u> 을 달성할 수 없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4. (삭제)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 -----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6. ----- ----- -----